서울지방우정청장 공고 제2016 - 112호

2016년도 우정9급 우정서기보(계리) 공무원 공개경쟁채용
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 공고

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(시험의 공고)에 의거 2016년도 우정9급 우정서기보(계리)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7월 13일

서울지방우정청장

---

1. 시험일시: 2016. 7. 23(토). 10:00~11:00(60분)

○ 입실시간은 9:20입니다.

2. 지역별 시험장소(서울): 10개 시험장

○ 응시번호별 시험장소는 붙임 자료「응시번호별 필기시험장소」,「시험실 배치표」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3. 응시자 준수사항

[일반사항]

가. 시험전일까지 **시험장소, 교통편, 소요시간** 등을 **반드시 확인**하시기 바랍니다. (단,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음)

※ 지정된 지역의 해당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, 타 지역 또는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음

나. 시험당일 **09:20까지** 해당 시험실의 **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.**(08:00부터 시험실 개방)

다. 본인 확인을 위해 **응시표와 신분증**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외 **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중 하나**)을 소지하여야 합니다.

- 학생증,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, 개명 등으로 원서접수 후 성명 및 주민번호가 변경된 경우는 변경 사유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함께 소지하여야 합니다.

※ 응시표는 인터넷원서접수시스템(https://kpost.jinhakapply.com)초기화면의 "인터넷원서접수"에 접속하여 출력가능

라.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『**컴퓨터용 흑색사인펜**』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**컴퓨터용 흑색사인펜**(사인펜에 "컴퓨터용"으로 표시되어 있음)을 **지참**하여야 합니다.

※ 연필이나 일반 필기구는 사용할 수 없음

마.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**하나의 답만**을 골라 그 숫자에 "●"로 **표기** 하여야 하며,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**정정할 수 없습니다.** (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)

※ 답안지는 훼손.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,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(▮▮▮▮▮)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됨

바. **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** 배탈, 수분 과다 섭취 등 **건강관리에 유의**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배탈.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, 시험종료 시까지 시험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함

사. 시험 종료 후에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, 사용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아. 수험생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,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으므로 **대중교통수단을 이용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자. **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,**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.

차.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. 시험감독관의 시험 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**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**

※ 계산기능 등이 있는 다기능 시계 및 스마트시계는 사용할 수 없음

[부정행위 등 금지]

가.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1호~5호, 7호 위반행위

■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,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함

○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○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○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
○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○ 병역·가점·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○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나.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1호~3호 위반행위

■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

○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
○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
○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

다.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4호 위반행위

■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

○ 시험실에서 문제책이 배부된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
○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
○ 기타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한 시험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

4.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: 2016. 8. 23(화)

○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(http://koreapost.go.kr/se)와 인터넷원서접수시스템(https://kpost.jinhakapply.com)에 게시합니다.

5.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비율 및 확인 안내

가. 가산비율표

<table>
<tr><th colspan="2">구 분</th><th>가산비율</th><th>비 고</th></tr>
<tr><td colspan="2">취업지원대상자</td><td>과목별 만점의
10% 또는 5%</td><td rowspan="2">.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
. 자격증 가산점은 1개만 인정
.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'나 ~ 라' 참고</td></tr>
<tr><td>자격증
소지자</td><td>공통적용 가산점
(전산직 제외)</td><td>과목별 만점의 0.5~1%
(1개의 자격증만 인정)</td></tr>
</table>

나. 취업지원대상자

○ 『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』 제16조, 『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29조, 『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33조, 『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』 제20조, 『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』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, 『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』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및 『국가공무원법』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,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.

○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,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(10%/5%/3%)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.

○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%(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%)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
※ 모집단위별 선발인원이 3명이하인 경우 가산특전 적용이 제외됨

※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(보훈상담센터 ☎ 1577-0606),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자원과(044-202-3258)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다. 자격증 소지자

○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(통신·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)을 소지한 공채시험의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(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)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.

구 분	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	
	1%	0.5%
9 급	정보관리기술사,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, 정보처리기사,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, 사무자동화산업기사, 정보처리산업기사,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, 컴퓨터활용능력 1급	정보기기운용기능사, 정보처리기능사, 워드프로세서(구 워드1급), 컴퓨터활용능력 2급

※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.

라.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

○ 가산특전대상자는 증빙서류(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, 정보화자격증 사본) 등을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방법으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○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(2016. 7. 22)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,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.

○ 자격증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6. 기 타 사 항

가. 필기시험에서 과락(40점 미만)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,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나. 응시자는 응시표, 답안지,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,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.

다. **2017년부터 우정9급 우정서기보(계리)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최소인원으로 실시되거나 실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**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우정청 인력계획과(☎02-6967-914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